

드디어 바뀌나,  
열악한 휴게실 현실 시행령에 반영하라!

# 휴게실실태 현장노동자 증언대회

- 일시 : 10월 13일(수)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교육원 15층
- 주관 : 민주노총



드디어 바뀌나,  
열악한 휴게실 현실 시행령에 반영하라!

# 휴게실실태 현장노동자 증언대회

10월 13일 **수** 오전 10시  
민주노총 교육원 15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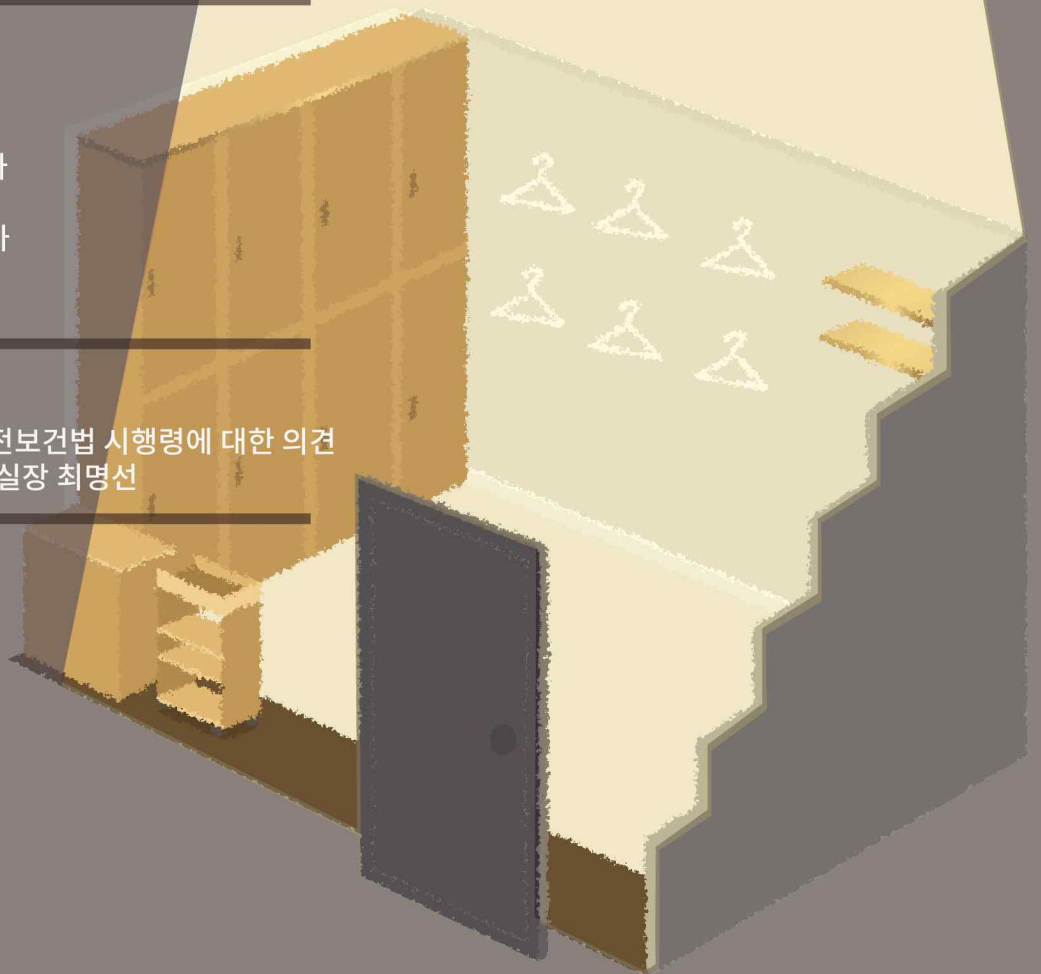
인사말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이태외

## 현장 증언

-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
- 병원 미화 노동자
- 가전설치/방문점검 노동자
- 면세점판매 노동자
- 학교 비정규직 미화 노동자
- 학교 급식실 조리 노동자
- 대학 청소 노동자

## 발제

휴게시설 설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실장 최명선





# 차 례

---

## ■ 인사말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이태의 .....	7
--------------------------	---

## ■ 현장증언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 .....	9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지부장 정명재	
병원 미화 노동자 .....	13
보건의료노조 A병원 미화 노동자	
가전설치/방문점검 노동자 .....	16
전국가전통신노동조합 박상웅 노안국장	
면세점판매 노동자 .....	24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부루벨코리아지부 김수현 사무국장	
학교 비정규직 미화 노동자 .....	27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 미화분과장 변인선	
학교 급식실 조리 노동자 .....	30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학교급식지부 지부장 문영심	
대학 청소 노동자 .....	34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동국대시설관리분회 사무장 오종익	

## ■ 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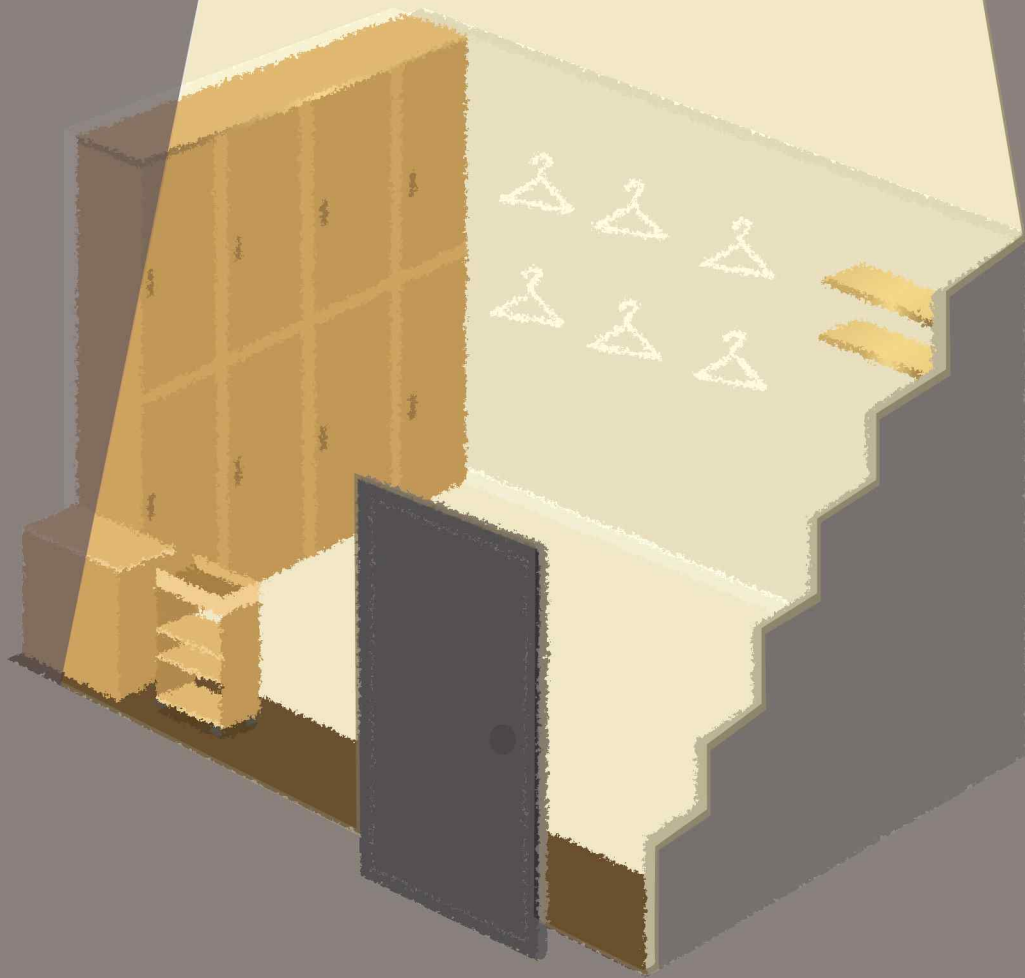
휴게시설 설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의견 .....	41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실장 최명선	

## ■ 첨부 자료

공공운수노조 사업장 휴게시설 현황 및 의견 .....	46
휴게공간 의무화 관련 서비스연맹 요구 .....	50

# 인사말

---



**휴게실실태  
현장노동자 증언대회**

올해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내년이면 시행될 이 법령으로 그동안 휴게시설이 없던 사업장에는 노동자들이 쉴 곳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휴게시설들은 세부규정에 맞춰 정비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동안 열악한 휴게시설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코로나 19의 상황으로 휴게시설 사각지대의 새로운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휴게실이 폐쇄되거나 좁은 휴게실 면적 때문에 최소한의 거리두기 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생겨나는 플랫폼노동자와 이동노동자의 경우에 설 수 있는 공간이나 거점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사회 속에 등장하는 새로운 노동 형태들에 발맞춰, 모든 노동자의 휴식과 안전이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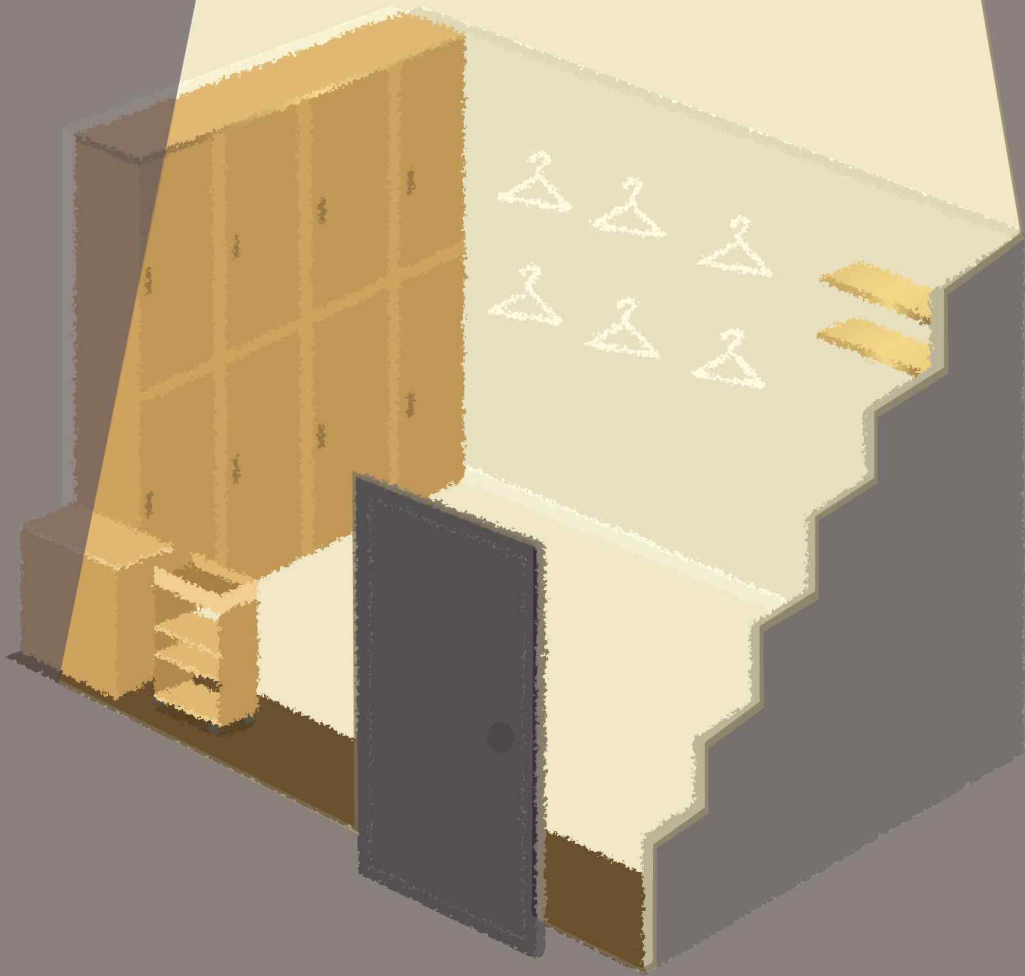
기존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휴게시설에 관한 의무 이행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장 휴게시설 가이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 등의 안내들 역시 존재만 할 뿐, 현장에 닿지 않는 기준이었습니다. 휴식권은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이며, 더 이상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복지 차원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지체말고 시급하게 논의되어 바뀌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 법령의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종과 사업장의 규모와 같은 특성들을 고려한 세부 규정들에 관한 논의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설치가 의무화가 되어도 현장의 노동자가 제대로 설 수 없는 시설들이라면 이전의 문제는 되풀이될 것입니다.

이 논의에 힘을 보태주기 위해 현장증언에 나서주신 현장 동지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현장 노동자들은 이러한 실태들을 끊임없이 폭로해왔고, 함께 투쟁해왔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요구들을 모아내어 시행령이 제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투쟁하겠습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안전하고 제대로 설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현장증언

---



**휴게실실태  
현장노동자 증언대회**

## 코레일네트웍스 현장 증언대회

- 일시 : 2021년 10월 13일(수), 10:00 ~
- 장소 : 민주노총 교육원
- 발표자 :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지부장 정명재



### 차례

1. 자회사 '위탁사업' 휴게실  
가. 현황  
나. 문제점
2. 자회사 '자체사업' 휴게실  
가. 현황  
나. 문제점
3. 개선방법



1. 자회사  
'위탁사업'  
휴게실

가. 현황  
나. 문제점

### 광역사업처 광역철도



### 광역사업처 질서지킴이



자회사에서 시설사용권한 및 유지보수 요청 시 주체 공방으로 장기간 소요  
현재 기재부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근로협약체에서 자회사 휴게시설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음  
코레일네트웍스의 위탁사업은 광역 131개역, 여객 11개역, 업무분담역 3개역,  
도심공항T 1개역, 공항리무진 1개소, 질서지킴이 22개역, 철도고객센터 1개소,  
SR고객센터 1개소로 구성된 전국 분산 사업장(총 171개역(개소))



1. 자회사  
'위탁사업'  
휴게실

가. 현황  
나. 문제점

#### 문제점

- 1) 주체 공방으로 장기간 소요  
↳ 위탁협약서를 기반으로 시설사용권한 및 유지보수를 진행하나 자회사란 이유로 신속한 조치 및 예산 확보(자회사 특성상 재정자립도가 낮음)가 어려움
- 2) 안전근로협약체의 한계  
↳ 안전근로협약체에서 휴게시설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모회사 사측의 해태로 형식적으로 운영 중
- 3) 전국 분산 사업장(총 171개역(개소))  
↳ 내년 8월 시행하는 휴게시설 관련법으로 모회사는 자회사 구조조정 내부적으로 논의 중 (광역사업처 광역철도 경우 근무체계를 변경하여 야간근무 시 휴게 금지, 막차 근무 후 귀가, 자택에서 휴게 후 쫓차 시 출근하도록)



2. 자회사  
‘자체사업’  
휴게실

가. 현황  
나. 문제점

주차사업처



연계수송처 KTX특송



주차사업처 및 연계수송처 KTX특송의 영업소는 전국 분산 사업장(약 65개소)으로 제대로 된 쉼의실(탈의실), 휴게실, 식사공간 없음  
사무실 면적, 매출 등에 따라 모회사(한국철도공사)에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음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민간기업, 지자체 등 부지의 소유주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함



2. 자회사  
‘자체사업’  
휴게실

가. 현황  
나. 문제점

문제점

- 1) 전국 분산 사업장(약 65개소)
  - ↳ 상주 직원이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다양한데 거점별로 휴게시설 설치. 모든 직원이 휴게시설 이용 불가능
  - 주차사업처 : 중앙선, 경원선, 경의선 등
  - 연계수송처 KTX특송 : 쉼의실(탈의실), 휴게실, 식사공간 없음
- 2) 모회사(한국철도공사)에 임대료를 납부
  - ↳ 철도 내 인프라를 이용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는데 이에 따른 과도한 임대료 요구
- 3) 부지의 소유주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
  - ↳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행정절차가 오래 소요되고 어려움



### 3. 개선방법

#### 휴게시설 관련법 보완

##### 1) 모자회사 간 수평구조 개선

- 휴게시설 설치하는 예산 문제로 자회사 구조조정 방지
- 추가적으로 자회사(=하청)에서도 시설사용권한 및 유지보수 가능하도록 법으로 강화
- 휴게시설 관련한 모회사의 권한과 책임이 크지만 위법 시 자회사에도 과태료를 동시 부과
- 또한, 안전근로협의체를 법으로 강화하여 구속력 있게 모자회사 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진행

##### 2) 휴게시설 환경

- 휴게시설 기준(조도, 습도, 온도, 환기시설, 냉·난방, 위치, 화장실 및 욕실, 사용인원, 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해당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휴게시설로 볼 수 없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한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미화팀 간접고용노동자입니다. 제가 일하는 병원은 유명하고 건물의 규모도 큰 대형병원입니다. 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이용하는 병원을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 저와 동료들은 매일 구슬땀을 흘려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고 빛나는 건물을 청소하는 저와 동료들은 출근해서 제대로 물 한 모금 마실 공간도 없는 처지입니다. 병원은 지하 5층부터 지상 20층에 가까운 거대한 규모이지만 출근해서 옷을 갈아입는 작은 탈의실은 지하에 가장 구석진 자리에 있는 등 현실적으로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없는 장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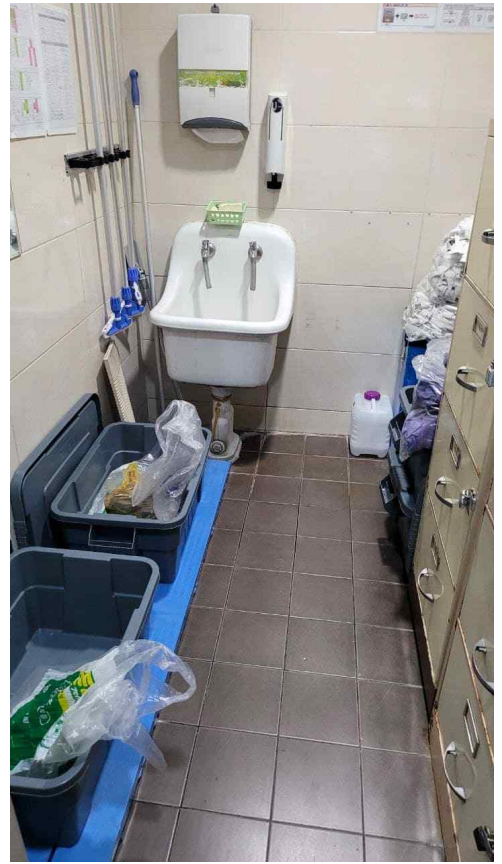
저와 동료들이 소속된 하청업체의 직원은 200명에 가깝지만, 작게 마련된 탈의실은 네 곳으로, 대략적인 평균 17제곱미터로 모두 들어가 서 있을 수도 없는 크기입니다. 이마저 옷장과 신발장 같은 가구는 빼지 않고 계산한 것입니다. 탈의실에는 냉난방 장치도 제대로 설치되어있지 않고, 환기 시설도 작동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너무 좁고 열악한 탈의실에서 혹여나 감염이 발생할까 걱정하는 것도 노동자들의 몫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계단 밑에서, 직원용 엘리베이터 앞에서, 창고 구석에서 임시로 머물러 있거나, 휴식 시간마다 밖으로 내쫓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 한 시간 삼십 분의 휴식 시간마다 구석에서 박스를 깔고 쉬거나 사람들이 다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플라스틱 의자를 놓고 쉬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밑, 창고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할 정도로 공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휴게실이 없어 이런 환경에서 매일같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 동료들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힘들게 일하다 물을 마시려고 구석에서 마스크를 잠시 내리기만 해도 시말서를 쓰게 합니다. 감염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알지만 땀 흘려 일하는데 물 한 번 마시려고 왕복 30분을 이동해야 하는 저희의 기본권도 찾고 싶습니다. 병원과 회사는 휴게실은 만들지 않으면서 코로나를 이유로 강력하게 제재만 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무엇보다 청결한 환경이 중요해졌습니다. 병원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병원을 쓰고 닦는 청소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더 커진 통제 속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인간답게 일하고 싶습니다. 매일같이 출근해 가지는 휴식 시간마다 휴게실에서 잘 쉬고 재충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층별 임시 휴게실 공간



▲지하 탈의실

## 전국가전통신노동조합 휴게실 현장증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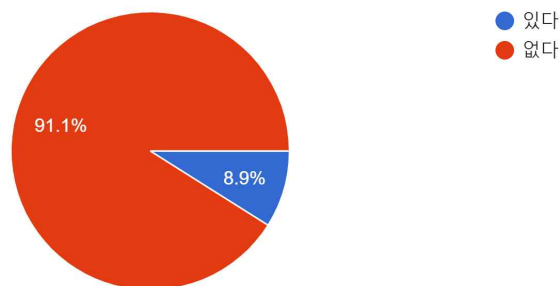
발언 : 전국가전통신노동조합 박상용 노안국장

생활가전업계를 대표하는 코웨이, sk, 청호, 바디프렌드의 방문 노동자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전상품으로는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가 있습니다. 방문서비스노동자는 가가 호호 고객집을 방문하여 상품을 점검하고 영업을 하는 코디코닥, sk매직mc라는 이름의 특수고용 노동자로 일하고 있으며 주문된 상품을 설치하는 서비스매니저, 엔지니어, 설치마스터라는 이름으로 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가 혼재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있지 않으며, 지점, 지국, 사업처, 창고 등 각각의 거점이 있기는 하나 일하는 현장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거점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문 서비스 노동자는 대부분 본인의 차량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점심식사를 차량 안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웨이의 경우 설치/as를 담당하는 서비스매니저는 지점 사무실로 출근하여 그나마 마련된 공간에서 휴식 및 각종/업무상 교육 등을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투쟁 끝에 정규직으로 전환 이후 회사는 고객과의 빠른 만남을 이유로 노동자를 물류창고로 내몰았습니다. 휴게공간도 화장실도 제대로 없는 환경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1년간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 요청했으나 회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 했으며 MINI RDC (거점별 창고운영)이라는 정책을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강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동조합이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현장의 사례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 2020년 창고실태조사 결과

1. 창고 내부에 별도의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나요?

응답 816개



분석결과 90%이상의 창고에 서비스매니저의 휴식공간이 마련되어있지 않으며 그에 해당하는 서비스 매니저는 추운겨울 더운 여름 밖에서 지낼 수 밖에 없는 현실임 또한 휴게 공간이 있다고 응답한 지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간이의자, 플라스틱 테이블 바람막이 없는 공간을 서비스매니저가 직접 개조하여 간이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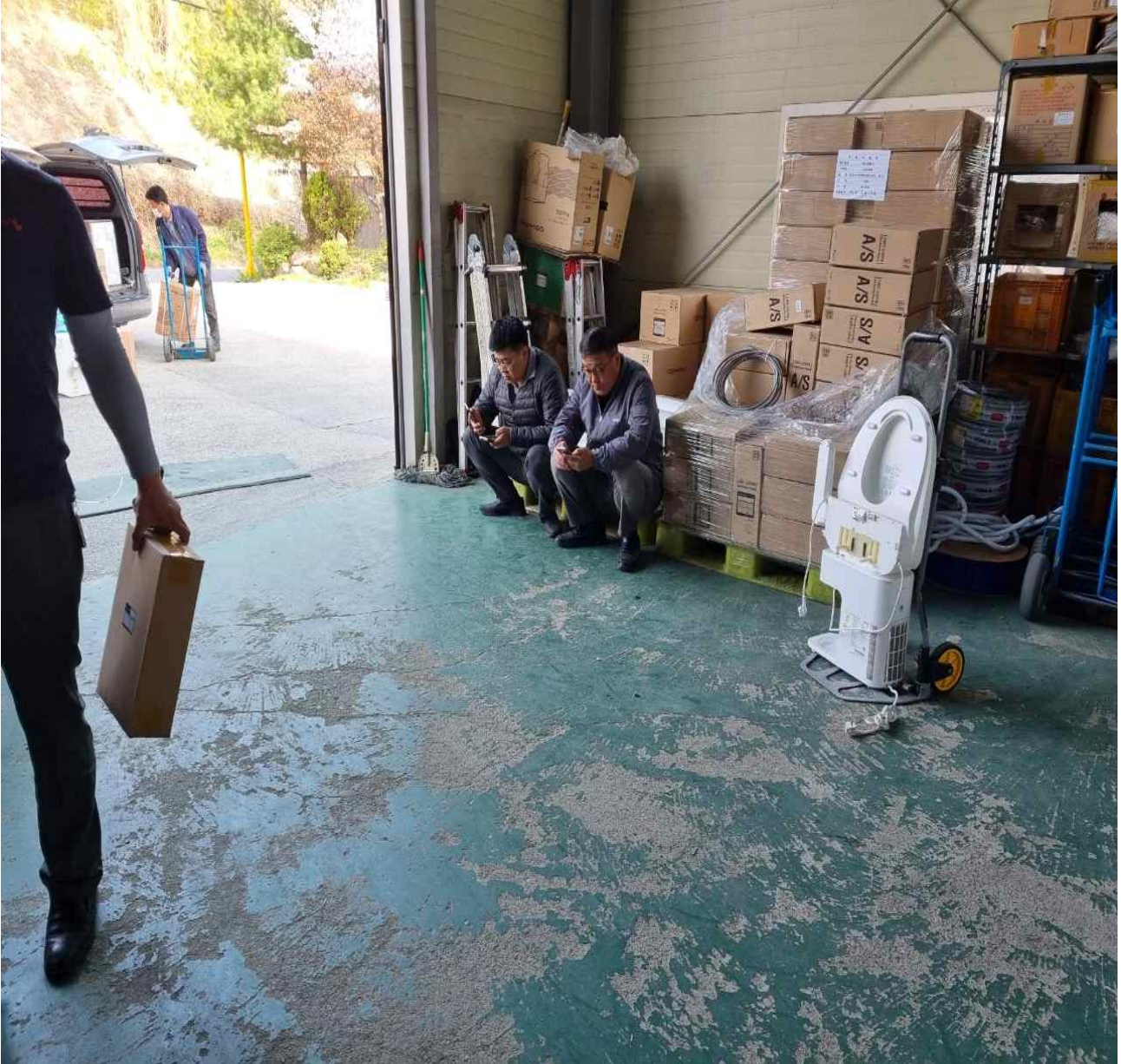
실제 사례 사진 : 창고 내 일부 공간을 서비스매니저가 직접 공사하여 사용 중



실제 사진 사례 : 창고 내 화장실 앞에 설치된 물 마시는 공간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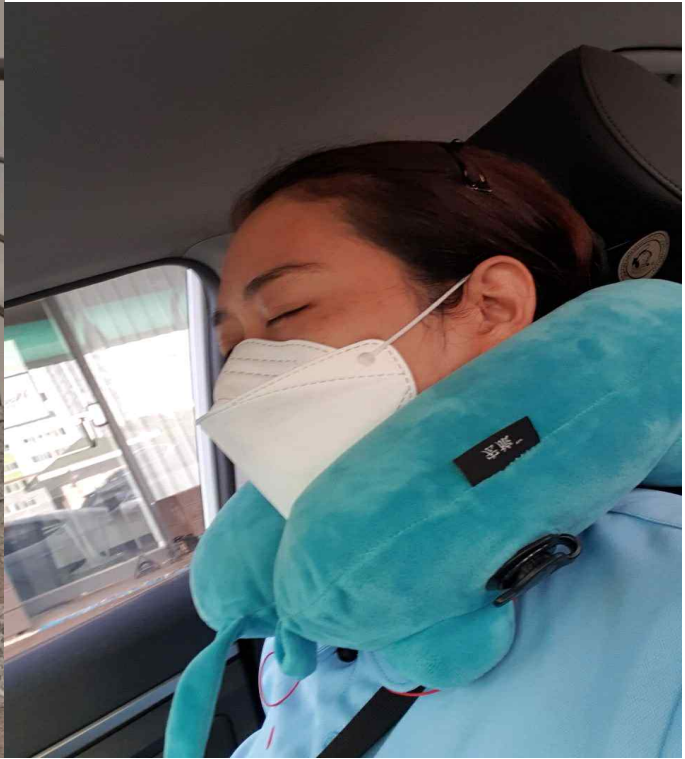
실제 사진 사례 : 창고 내 휴게공간이 없어 쪼그려 앉아 휴식을 취함



● 불안전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공간 외 휴게실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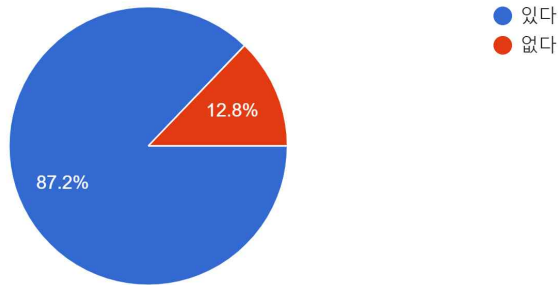
사진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겨울철 난방유가 아무렇게나 비치되어 있으며 소화기는 어느 곳에 있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는 불안정한 공간에 놓아져 있는 환경 개선과 휴게공간 마련이 시급함.

현장에서 가가호호 방문점검원은 휴게공간이 없어 고객집 앞 비상계단과 개인의 차에서 식사를 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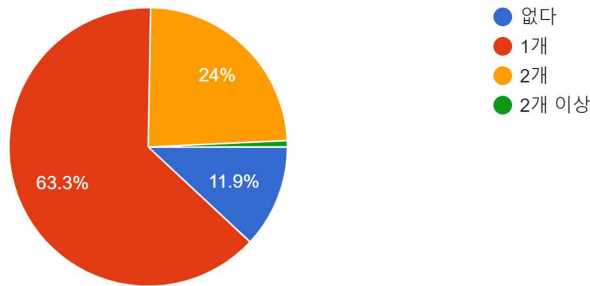
2. 창고에 화장실은 마련되어있나요?

응답 81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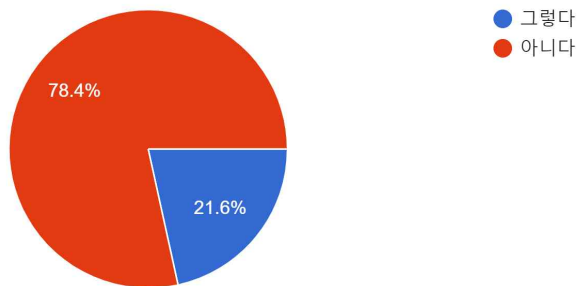
3. 창고에 화장실은 몇 개 인가요?

응답 821개



4. 창고에 화장실은 남녀 별도로 마련된 화장실 인가요?

응답 79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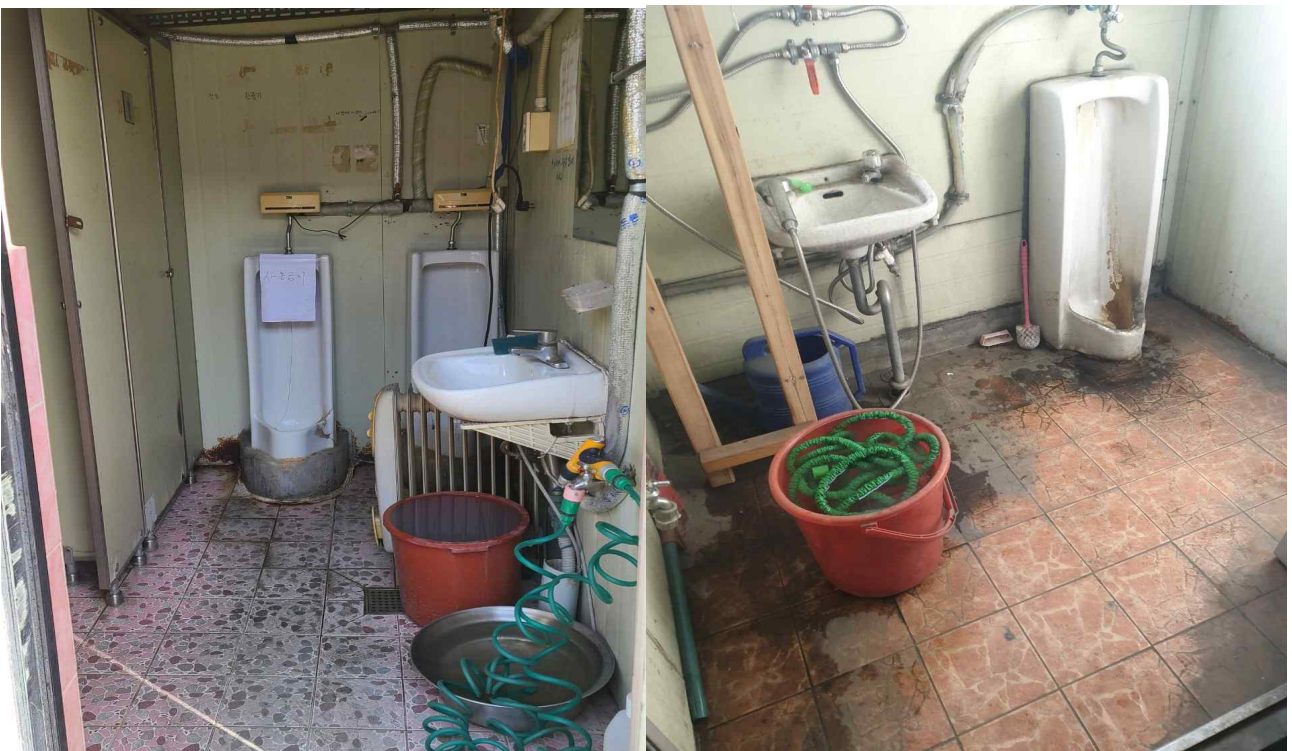


분석결과 87%정도 창고에 화장실이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한 지점의 인원이 많게는 37명으로 인원대비 마련된 화장실의 수가 1개로 턱없이 부족하며 심지어 화장실이 없는 비율이 12%에 달한다. 또한 추운 겨울철 창고 대부분의 수도시설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 동파 및 결빙으로 있는 화장실도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80%가량의 설문응답 결과가 남녀화장실의 구분이 없어 여성 서비스매니저가 함께 생활하는 창고는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실제 사례 사진 : 구식 화장실 및 수도 시설 없음



실제 사례 사진 : 겨울철 결빙 및 동파로 사용 불가, 고장 난 소변기 수리 안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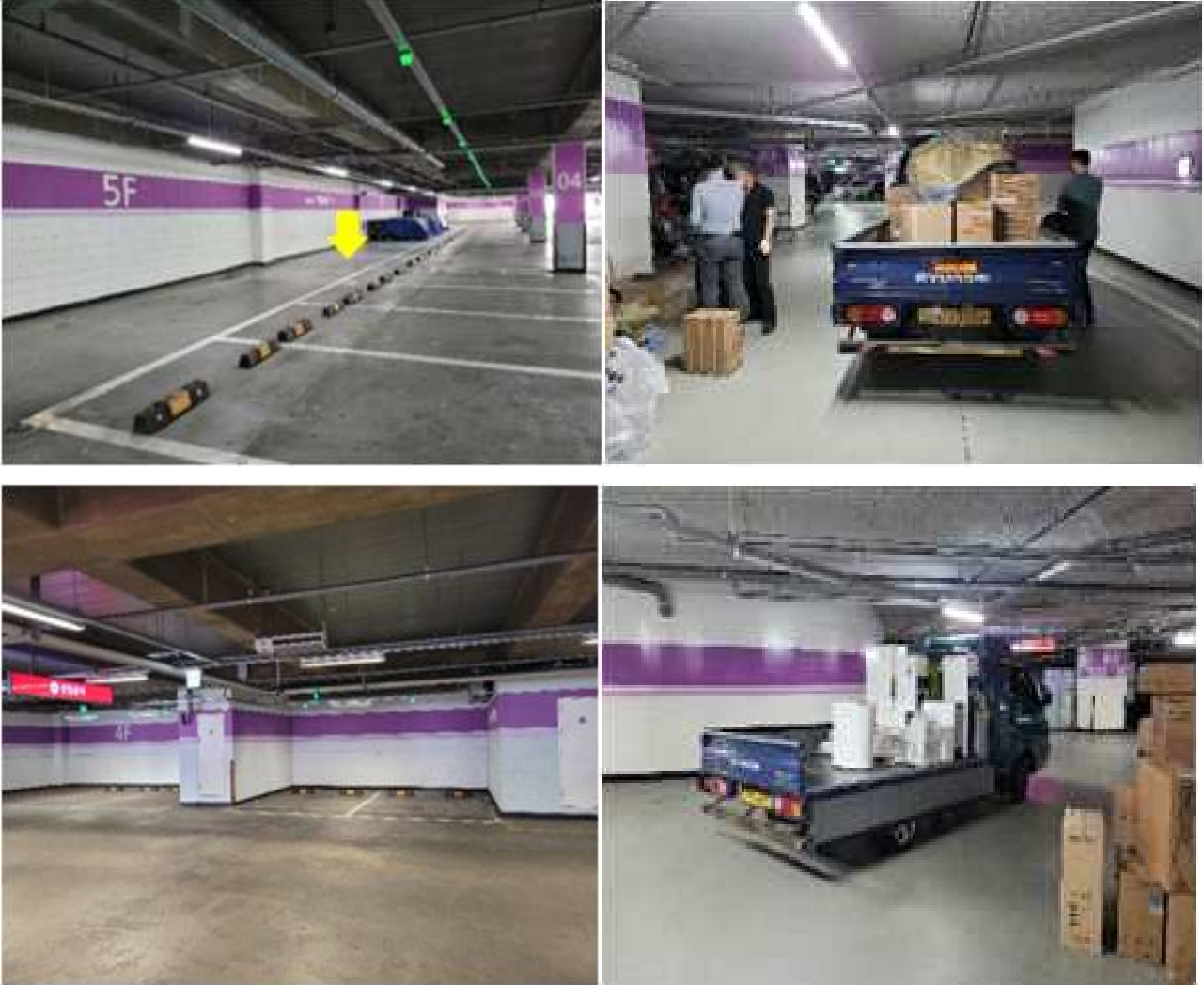


실제 사례 사진 : 남녀 구분 없는 화장실.



※ 회사의 정책 : 각 거점별 MINI RDC(거점별 창고 운영)

수원지역의 기존 창고를 분창하여 수원관할지역(오산)홈플러스 주차장을 임대하여 MINI RDC라는 이름하에 운영중 임. MINI RDC의 근본적 목적은 빠른 고객방문만을 위한 정책이며. 그 어디에도 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은 없으며 화장실조차 찾기 어려움.



※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안전과 쉼터가 보장되지 않는 거점별 창고 운영에 반대

기존 창고의 일부 공간을 개조 휴게실 마련을 요구

기존 창고 계약 만료에 의해 이동시 휴게공간 확보를 필수 조건으로 이전 요구

##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면세점업종 휴게실 현장증언

면세점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까지 거의 매년 최고매출 일으키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렸습니다. 면세점들은 고객유치를 위해 경쟁하듯 더 좋은 시설, 고객이 오래 머물고 싶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안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저와 같은 판매서비스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은 면세점들의 무관심 속에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부분의 면세점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적개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의 노동자가 한 곳에서 일합니다. 하지만 근무인원수에 비하여 휴게공간이 턱없이 협소하거나, 매장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 쉬는 시간에 이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휴게실의 개수도 한 곳 혹은 두 곳인 경우가 많으며, 내부 시설도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사용 인원수에 비하여 설 수 있는 의자 수는 부족하여 잠깐 부은 다리를 주무르는 정도입니다.

휴게실의 위치는 대부분 매장과는 멀리 떨어진 구석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고객의 이동 동선을 피하여 직원동선을 통해 이동해야 합니다. 설 수 있는 시간은 30분 남짓 되는데 이런 휴게시간의 상당부분이 휴게실로 이동하고, 앉을 수 있는 곳을 찾는데 허비하고 있습니다. 휴게실 이동시간만 10분이 넘게 소요되는 곳도 있습니다.

휴게실이 매장과 같은 층에 있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은 몇 층 위나 몇 층 아래, 혹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고, 심지어는 화장실 옆에 의자를 두고 휴게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간 곳에서 불편하지만 잠시라도 앉아서 쉬면 다행입니다. 시간을 들여 이동한 휴게실에 사람이 가득하여 설 수 없으면 다시 그만큼의 시간을 들여 되돌아가거나, 일어나는 사람의 자리를 줄 서서 기다려야 하기에 휴게시간이 되어도 휴게실 사용을 포기하고 많은 노동자들 냉난방도 되지 않는 계단, 또는 후방창고, 락커룸 바닥에 상자나 에어캡을 깔고 잠시 앉아 숨을 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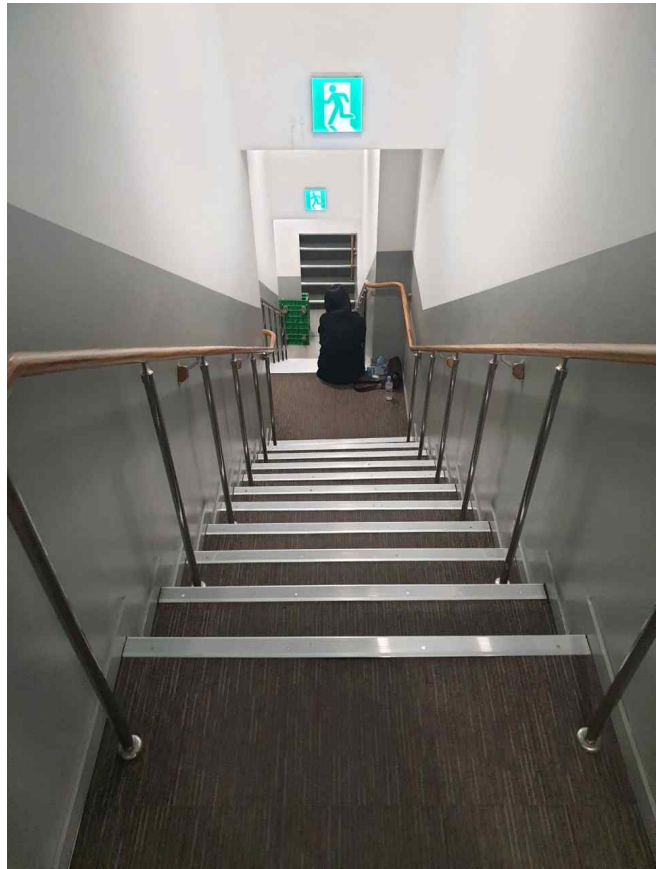
2020년 노동조합은 공동요구안을 통해 근무경개선을 요구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면세점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사이 코로나19가 발생하였고 일부 면세점들은 감염확산을 방지한다며 휴게시설을 폐쇄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있던 휴게공간도 감염확산을 이유로 폐쇄하며, 설 곳이 없는 노동자들이 락커룸처럼 좁은 공간에 더 많이 모여 오히려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종일 서서 일하면서도 잠깐의 휴게시간을 포기하는 동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을 꼬박 서서 일하는 판매서비스 노동자들은 다른 업종보다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등 발 관련 질병이 많습니다. 판매서비스노동자들에게 근무 중 휴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는

우리가 일하고 머무는 공간에서 정당하게 쉴 권리가 있습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잠깐의 휴식시간을 쾌적하고 편안히 보낼 수 있는 올바른 휴게공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학교 청소노동자들의 휴게실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 1. 학교 청소노동자들의 휴게실 실태와 문제점

전국의 모든 학교에는 청소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학교 내 청소노동자 휴게실이 없는 경우는 적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용역업체 소속이던 청소노동자들이 교육공무직으로 전환이 되기도 하였고, 우리 노조의 투쟁의 성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업무 특성 및 노동강도상 휴게실이 꼭 필요한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에어컨과 창문도 없는 휴게실이 다수 존재합니다. 선풍기도 직접 가져와 써야 하고, 소파 하나 없이 창고나 계단 밑에 마련된 임시 휴게실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 청소노동자의 경우 업무 특성상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데 대부분 여성인 청소노동자와 대부분 남성인 당직노동자가 같은 휴게실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또 휴게실에 세면 및 샤워시설이 있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 소파 하나 없이 창고에 마련된 휴게실



▲ 에어컨과 창문 없이, 선풍기도 직접 가져와야 하는 휴게실



▲ 복도 계단 밑 휴게실

## 2. 학교 청소노동자 휴게실 개선방안

교육청에서는 학교 청소노동자 휴게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지만 개선은 더디기만 합니다. 교육청은 학교 공문 발송 정도로 책임을 다 하려 하고, 또 교육청 가이드라인은 권고에 불과해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학교별 휴게실 실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산 및 학교 내 공간 문제를 핑계로 들어 휴게실 설치 및 개선을 거부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휴게실 설치 기준과 더불어 미이행 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 서울시교육청 급식 휴게실 실태조사 분석

전체 급식실 1364개 학교

1. 휴게실 없음: 10개 (증축공사 4개교, 급식시설 없는 1개교 포함)  
급식휴게실 없는 학교 5개교: 지구촌학교, 서울운현초등학교, 여명학교, 숙명여자중학교, 숙명여자고등학교

2. 협소 휴게실(1인 평균  $1m^2$  이하): 167개

\* 사례

9명이 1.1평에서 휴게( $3.7m^2$ )-잠신고등학교

9명이 1.21평에서 휴게( $4m^2$ )- 장훈고등학교

5명이 0.7평에서 휴게( $2.3m^2$ )-서울개웅초등학교

3.편의시설 미구비(1354개교 중)

1) 에어컨 미구비: 36개교

2) 냉장고 미구비: 681개교

3) 컴퓨터 미구비: 683개교

4) 건조대 미구비: 443개교

5) 옷장

- 사용인원에 비해 부족한 학교 1046개교

23명 근무교에 옷장 1개: 덕원중-여고-예술고

21명 근무교에 옷장 1개: 청원초-중-고-여고

17명 근무교에 옷장 1개: 경성중-고-홍익디자인고

16명 근무교에 옷장 1개: 송곡여중-관광고-여자고, 대원국제중-고-외국어고

15명 근무교에 옷장 1개: 하나고, 명덕여중-고-여고-외고

14명 근무교에 옷장 1개: 동도중-서울디자인고, 휘경여자중-여고, 혜성여고, 경기고, 선정중-고-국제고, 신일중-고, 보인중-고, 선화예중-고,

6) 샤워실

- 샤워실 미구비: 152개교

- 샤워 수전 부족: 607개교(3인당 1개 미만)

18명에 수전 1개: 보인중-고교

16명에 수전 1개: 송곡여중-관광고-여자고

14명에 수전 1개: 동도중-서울디자인고, 혜성여고

13명에 수전 1개: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이화-금란고등학교, 충암중-고, 서울공업고등학교

12명에 수전 1개: 영도중-강서고, 서울보라매초

※ 별도 샤워 수전 없이, 화장실 세면대만 있는 경우 많음.

7) 대부분 샤워실이 화장실 내에 화장실과 미분리 상태

※ 동도중, 서울디자인고등학교 공동, 남휴게실6㎡, 여휴게실3㎡ 남자4명 여자 10명 에어컨 및 전용화장실, 샤워실은 여자휴게실에만 있음 화장실, 샤워실 한 공간 같이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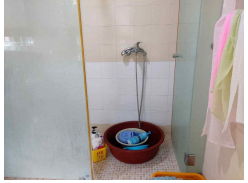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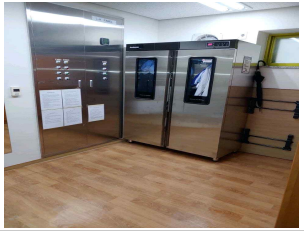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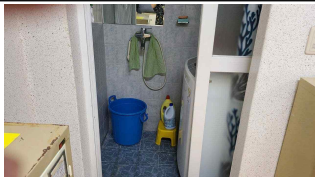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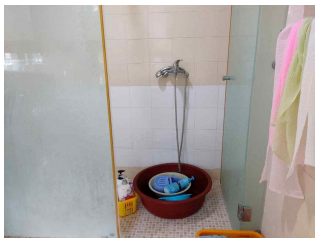


1. 면적 최소 2㎡, 냉난방기, 샤워실(샤워수전 최소 2인당 1개 이상), 화장실, 세탁기, 건조기, 컴퓨터, 옷장(개인 옷장), 창문 설치.

샤워실과 화장실 구분(최소 칸막이로 구분), 남자조리원/사 있는 경우 별도 조치 필요.

2. 휴게실 설치 및 설계 시, 사용 노동자에게 설명 및 협의 의무화. (동선이나, 실제 사용과 무관하게 설계 또는 설치)

휴게실 실태 조합원 파악)

지원청	학교명	인원(명)	문제점	사진
동작	**초	10	건조기, 냉장고 없음, 휴게실 좁다.	
강서양천	**초	7	샤워실 좁다, 샤워 수전수 1개임.	
강서양천	금**유치원	2	남자조리사이고 영양사선생님과 같이 휴게실을 사용하고 있다. (남여 샤워실 함께 사용)	
강서양천	강*초	8	휴게실이 너무좁다	
남부	오*남	6	휴게실공간이 너무좁다	-
남부	세*초	5	냉장고 ,컴퓨터가 없다	-
북부	원*초	5	샤워기부스1. 샤워실열악.공기청정기.작업복건조기 없음.	
동부	상*초	5	휴게실전체370*265 사용할수있는공간262*117전기차단기.소독고 정리원함/ 좁아서컴퓨터 영양사방에 있음.작은냉장고 원함	
남부	선*초	4	화장실 악취	-

서부	서*중	4	옷장과. 샤워시설없음.	 
서부	가**초	12	=310*175(휴게실),210*165(샤워실). 1인당 0.45 => 교육청 자료와 차이 큼. 교육청 36m <sup>2</sup> 에, 1인당 3.3m <sup>2</sup>	
남부	신**초	7	7명 사용할 공간 너무 좁음. 화장실 공간 열악함(1명 들어감). 샤워부수전 1개 있음(4m <sup>2</sup> , 1인당 0.6m <sup>2</sup> )	
북부	중*중	7	건조기 없음.(교육청 자료는 있음으로 파악) 컴퓨터 책상 없음.	

## 동국대 휴게실 문제점

대부분의 휴게실이 지하 또는 계단 밑에 있음. 특히 아래 두 휴게실은 열악함.

### 1. 혜화관 6층 문제점

- 창문이 없다.
- 휴게실이 공간아니라, 계단을 합판으로 막은 공간에 불과하다.
- 겨울에 우풍이 심하다.
- 장마철에 계단을 타고 비가 들어오고, 이로 인해 항상 습해서 곰팡이가 핀다.
- 공간이 좁아서, 2인 사용하라고 하나 실상은 1명만 이용하고, 1명은 강의실 등에서 휴식 취하므로, 사실상 휴게실이 없는거나 마찬가지임.
- 조합원이 겨울에 추워 직접 돈을 벽면에 방한지등을 붙이는 실정임



혜화관 6층 휴게실. 계단 공간만 합판으로 막음. 위층은 옥상이라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장마철에 비가 들어옴.



계단 위쪽에서 바라본 모습. 창문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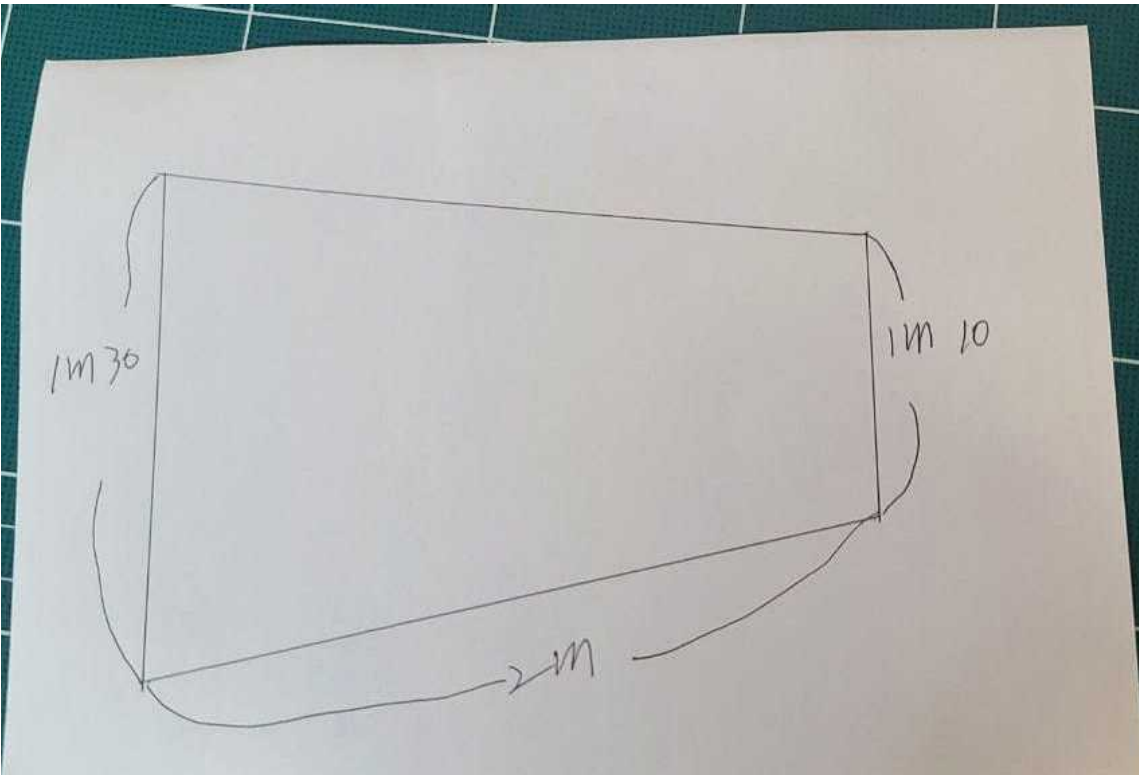
계단으로 물이새어 들어와 곰팡이 핀 모습



환풍기 있으나 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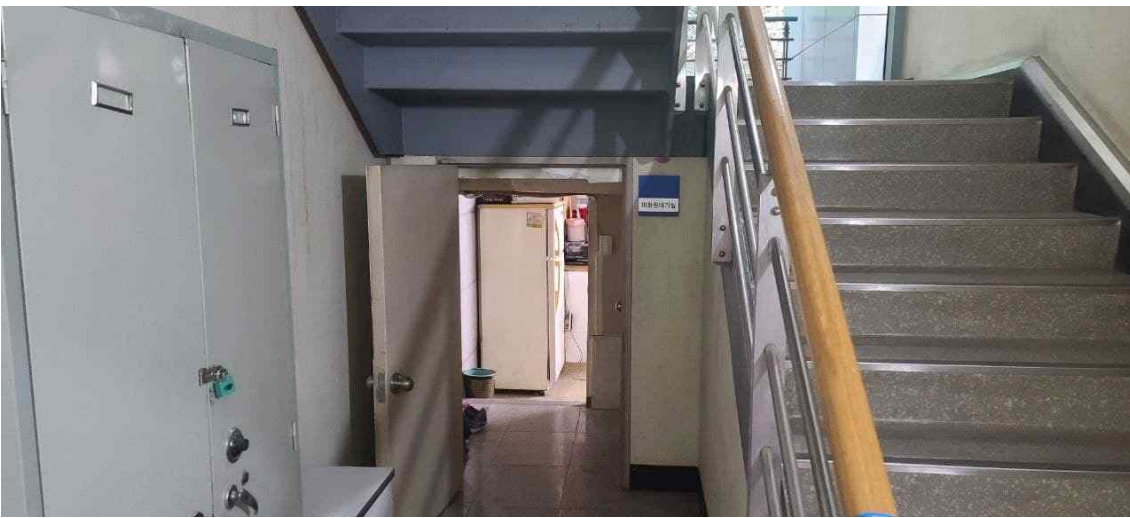
조합원이 추워서 사비로 방한물품 붙여 놓음. 공간이 좁아 1인만 사용. 2인 사용불가



혜화관6층 설명도. 입구쪽이 넓고, 안쪽으로 갈수록 좁아짐. 사다리꼴 모양

## 2. 혜화별관1층

- 별도 휴게공간이 아닌, 계단 아래를 막아 휴게실 만듦
- 창문이 있으나, 열면 건물사이 공간으로 향시 습하고 악취 및 담배 냄새 나기 때문에 열수 없음. 창문 없는거나 마찬가지로
- 항상 습하고, 불을 켜지 않으면 낮에도 캄캄함.
- 계단 밑 공간을 막아서, 천정이 평면이 아니고 낮아서 들어갈 때 머리를 숙이고 들어 가야 함 (높이 150cm)
- 내부에 시멘트벽으로 된 장애물이 있어, 공간이 비좁은데, 2명이 사용. 2명이 눕기 힘들.
- 습하여 곰팡이 펴



계단 밑 공간 막아 휴게실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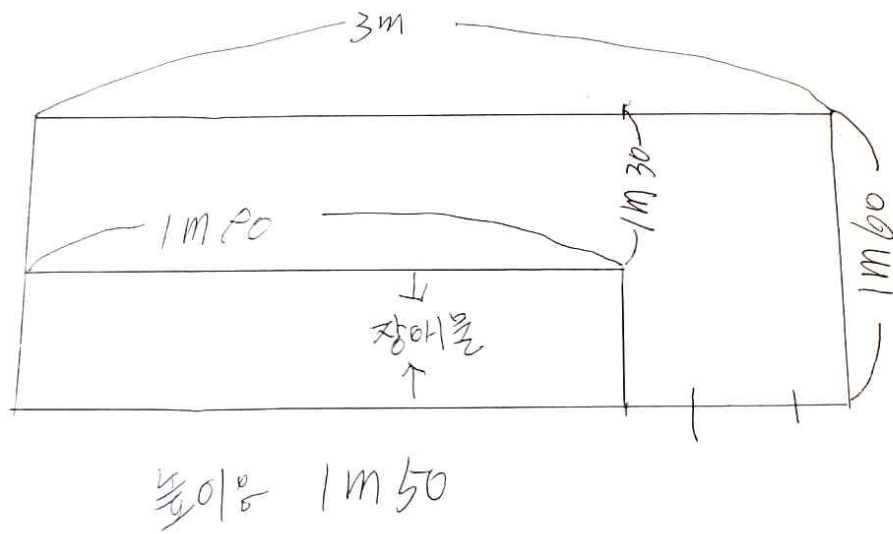
천정 입구 낮음. 고개 숙이고 들어감. 머리 충돌 위험



냉장고 옆, 시멘트 벽으로 된 장애물. 공간을 많이 차지함



공간 비좁고, 습해서 벽면 아래 곰팡이 핏. 창문이 있지만 유명무실.



혜화별관1층 휴게실 설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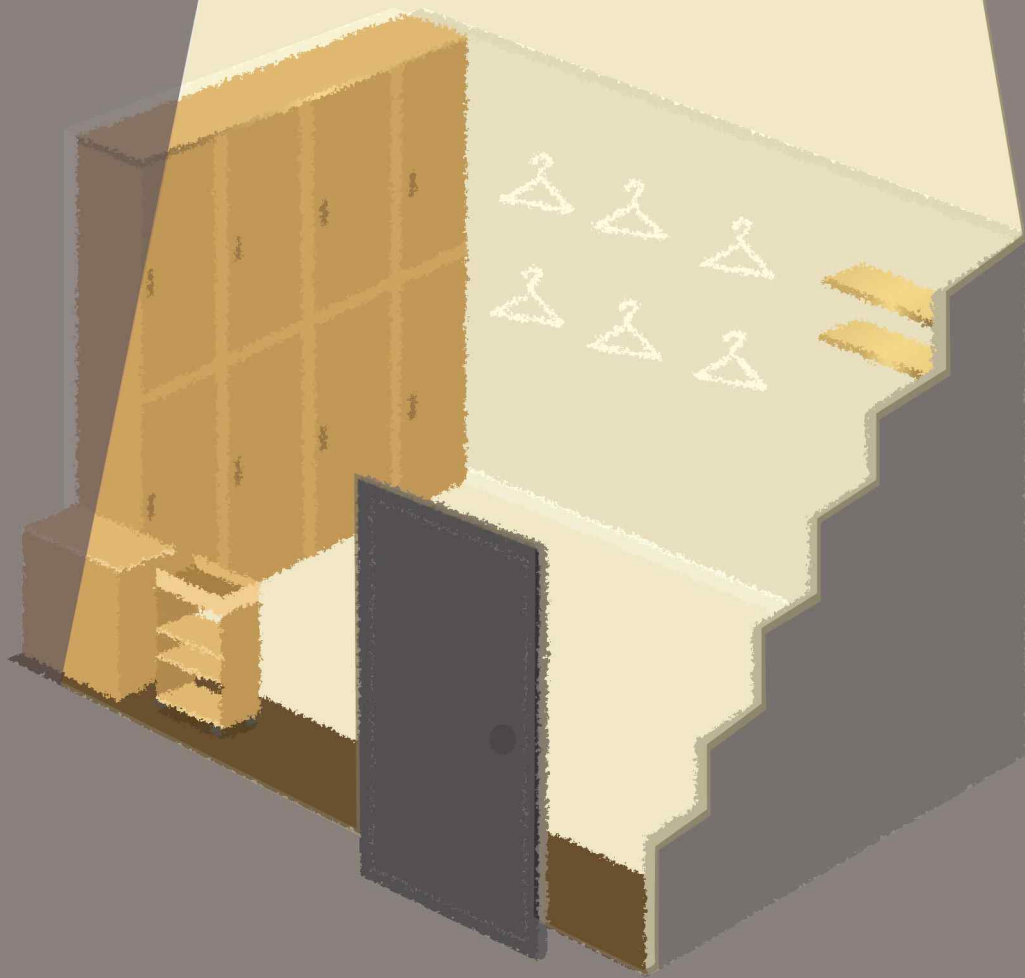
### 서울대 휴게실 문제점



서울대 농생대 휴게실. 6명이 사용하기에 턱없이 좁음.

# 발제

---



**휴게실실태  
현장노동자 증언대회**

# 휴게시설 설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의견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민주노총은 휴게시설 설치 관련 내부 논의 이후 최종의견을 제출할 예정임.

## 1. 휴게시설 설치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류

### ○ 의견

- 설치 대상은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규정.
- 이동 노동, 장소 임대 사업장 등 제한적으로 관리기준 일부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
- 사업장의 파견 노동자, 하청 노동자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 주체가 원청 사업주임을 명확히 하여, 사업장에서 법령 이해에 대한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 근거

- 노동자들이 휴식권 보장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의 건강권의 문제이자 기본 인권의 문제로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에 휴게시설의 설치 기준을 차등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며 사회적으로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
-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는 산안법 39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었고, 통칙 조항으로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치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처벌 규정이 있는 조항임. 동 규정에 이미 분진 발산 장소나 유해물질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개정 산안법 128조의 2 휴게시설 설치가 도입되었고, 해당하는 사업장과 설치 관리기준을 하위법령에 정하도록 하고 있음.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79조에 있는 내용을 개정 산안법 128조의 2에서 적용대상을 상시근로자 00인 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의 충돌이 발생하게 됨
- 고용규모에 따른 차등적 적용은 많은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음. 특히, 사무직, 서비스직, 플랜트와 같은 장치 산업, 기계 제작 조립 등의 경우 고용인원과 매출액, 사업장 면적과는 연관성이 매우 낮

음.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설치 기준 준수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매출이나 이익 규모도 크고, 사업장 면적도 충분히 확보 되면서도 휴게실 설치 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전면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충돌하지 않도록 고용규모나 업종과 무관하게 전면 적용하도록 하면서, 이동노동이나 장소임대 사업장의 경우 등과 같이 제한적으로 일부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대한 보완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 이동 노동자, 장소 임대 사업장 등의 휴게시설

- 작업장소가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는 운송 (배달, 운전, 화물운송), 점점이나 검침, 가전제품 등의 설치 수리, 학습지 교사나 방문 판매 등 다양한 직종이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정부, 지자체가 휴게시설 설치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었으나, 이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산안법에 이동노동을 하는 사업주 의무가 명시되어야 함. ‘공공휴게시설 이용이 보장된 경우 사업주 의무 면제’ 로만 규정되어서는 안 됨.
- 이동노동을 하는 경우에도 본사 및 주요 거점장소에는 사업주가 휴게실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공공휴게시설 이용에 대해 사업주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협약이 맺어져 있고, 일정한 비율의 이용료 부담을 하도록 하고, 관리기준에 따른 의무도 공동으로 부여되어야 함.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도록 해야 이동노동에 대한 공공휴게시설 이용이 실질화 될 수 있음.
- 장소 임대 사업장의 경우나, 아파트형 공장처럼 사업장 면적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공동휴게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이용과 관리의 공동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다만, 임대 사업장인 경우에도 임차인이 독자적인 휴게실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이거나, 사업장 면적이 작은 경우의 공동 휴게실도 독자적인 휴게실 설치가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사업장 인근의 휴게 공간 (카페 등)을 확보하여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지원, 사용계약을 하면 의무를 준수하는 것으로 보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이는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 하고, 연구진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장 총 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혹은 휴게시설의 최소 면적이나 1인당 면적 기준을 충족할 수 없으며, 공동휴게실 설치도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함.

## 2. 설치, 관리 기준

### 1) 1인당 면적 기준,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한 적정한 면적과 개소 규정

- 휴게실의 최소 전체 면적은 9㎡가 되어야 함.
- 휴게시설의 최소면적 기준뿐 아니라 1인당 면적기준이 제시되어야 함.
- 사업장 실태조사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휴게실 면적임. 1인당 면적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휴게시설 법제화가 추진된 취지 자체가 반영되지 않는 것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한 면적과 개소 설치도 기준제시가 반드시 필요함.
- 1인당 면적기준에서 상시근로자가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임을 명시함.
- 1인당 면적 기준에서는 휴게실에 구비되어 있는 사물함, 비품 등의 면적은 제외하는 기준임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함.
- 근 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 야간 경비 등 수면시간이 있는 작업등 일부 작업은 누워서 쉴 수 있는 정도의 면적이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기본적으로는 수면시설과 휴게시설은 분리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야간 경비등과 같은 경우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인접거리에 설치되도록 명시함.
- 사무직 노동자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고,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업무 특성으로 별도의 휴게실 설치가 필요함. 협소한 개인 작업공간은 휴식권을 보장 할 수 없음.

### ○ 교도소 1인당 수용거실면적 2㎡ 미달은 위법 으로 국가가 배상 판결

- 2016년 12월 헌법 재판소 “일정 규모이하 면적의 구치소 거실에 수용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 으로 결정
- 2019년 11월 서울중앙지법은 판결
-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 중략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2㎡에 미달할 경우 이는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

### ○ 2014 서울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에서는 1인당 5㎡ 내외의 적정규모 공간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 서울시 교육청 학교급식 노동자 휴게실 실태조사 1,361개 학교 휴게실 실태조사 1인당 면적 기준 평균 2.4㎡. 평균 이하 학교 다수

## 2) 휴게실 설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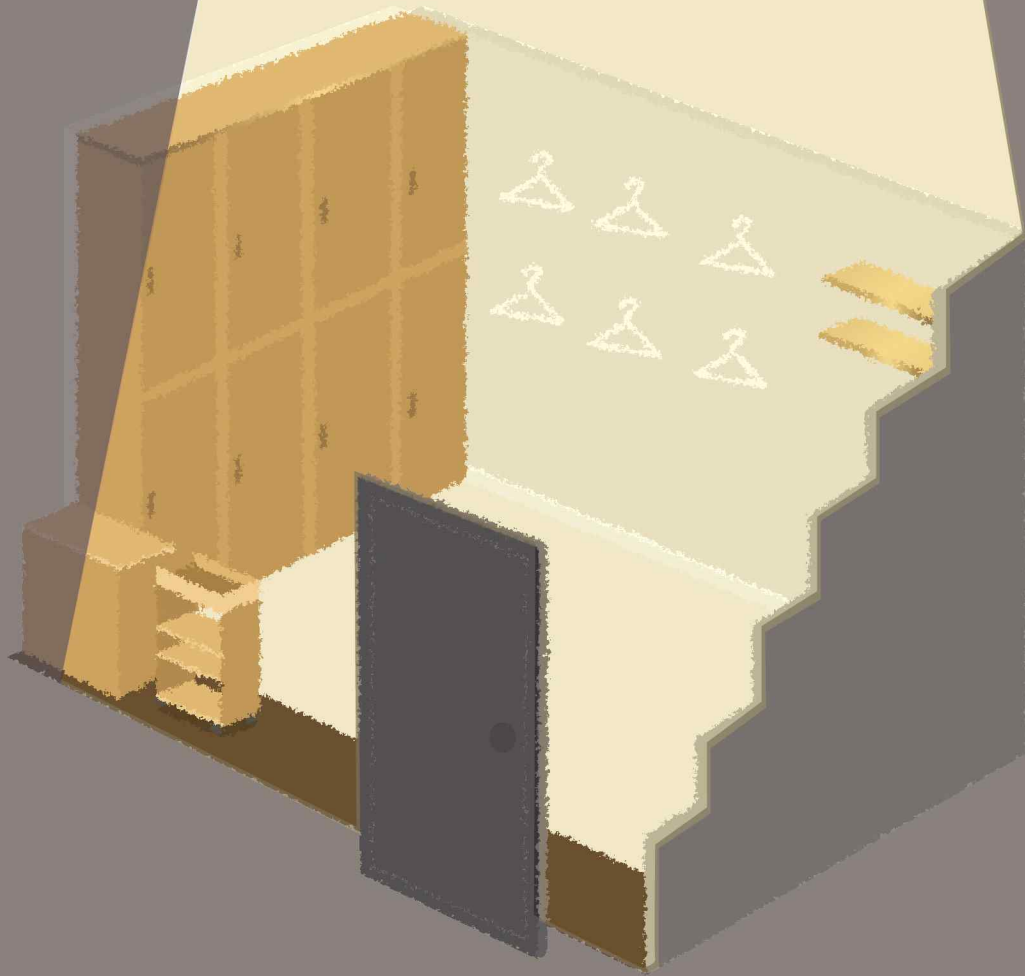
- 가이드 라인에 명시되었던 작업 장소 100미터 이내, 층별 설치 등이 관리기준에 명시되어야 함.
- 옥외 작업의 경우에도 휴게실 설치를 원칙으로 명시되어야 함. 건설업의 경우에도 휴게실 설치가 충분히 가능함. 단기간의 공사 등 일정기준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천막이나 그늘막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옥외 작업의 경우 휴게실 외에 추가로 설치된 천막, 그늘막 등 휴게시설 이라 하더라도 온도, 습도, 조명, 환기, 소음 및 휴게시설 관리 조항이 적용되어야 함
- 하청 노동자가 사용하는 휴게실은 별도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설치와 관리기준은 사업장이 동일한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함.
- 남성, 여성 노동자의 휴게실 별도 설치가 명시되어야 함
- 지하나 창고, 옥상이나 계단 밑, 소음이 심한 장소 등에 휴게실 설치 금지를 명시하여야 함.
- 휴게실은 화장실, 세척실, 수면실, 수유시설등과 별도 설치를 명확히 규정함.
- 청소 노동자, 건설노동자 등과 같은 업무의 경우 온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세면실, 세탁시설, 목욕시설 등이 휴게시설과 인접 거리에 설치되도록 하여야 함
- 휴게시설은 내화성이 있는 재료로 설치하도록 함.

## 3) 휴게실 관리 운영

- 설치 비품에 탁자, 의자, 소화기를 비롯하여 냉방기, 난방기, 환기시설, 소방시설(스프링 쿨러) 등의 설치가 명확히 명시되어야 함. ‘덥거나 춥지 않도록 냉난방 기능을 갖추어 적정하게 유지’ 는 모호한 기준으로 현재의 휴게실 실태를 개선하지 못함.
- 휴게실의 적정온도는 여름 20-28도, 겨울 18-22도를 유지하고, 습도 50-55%를 유지하도록 명시
- 휴게시설 내 소음 허용기준은 50dB 이하로 유지하도록 함.
- 휴게시설 내 조명은 100-200 Lux로 유지하도록 함.
- 휴게시설 내 식수, 화장지등 기본 비품을 비치하도록 함.
- 휴게시설에 표지부착 뿐 아니라, 관리 담당자, 주기적인 관리 실태를 부착하도록 명시
- 휴게시설 관리에는 설비, 비품등의 안전한 설비 보수 등이 명시되어야 함 (휴게실 상부장 사고)
- 휴게시설의 담당자 지정, 주기적으로 청소, 소독 진행 명시
- 휴게실 관리 실태에 대한 노동자들의 개선 요구 청취 및 개선 절차를 명시하도록 함
- 휴게실에 작업도구, 물품 등 노동자의 휴식과 무관한 물품이 적재되지 않도록 명시함.

# 첨부자료

공공운수노조 사업장 휴게시설 현황 및 의견  
휴게공간 의무화 관련 서비스연맹 요구



## 휴게실실태 현장노동자 증언대회

# 공공운수노조 사업장 휴게시설 현황 및 의견

## 1. 발전소 사업장 휴게시설 현황

### 1) 발전소 비정규직

- 탈의실, 휴게공간, 식사공간 구분 없이 사용 중



▲휴게실 겸 탈의실 식사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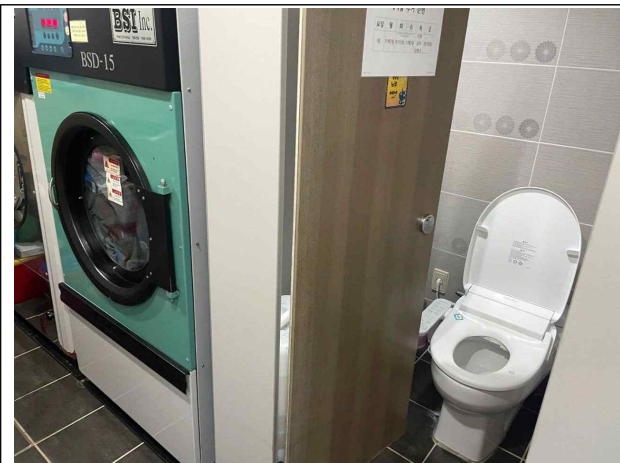
▲좌식 휴게공간 내 식사용 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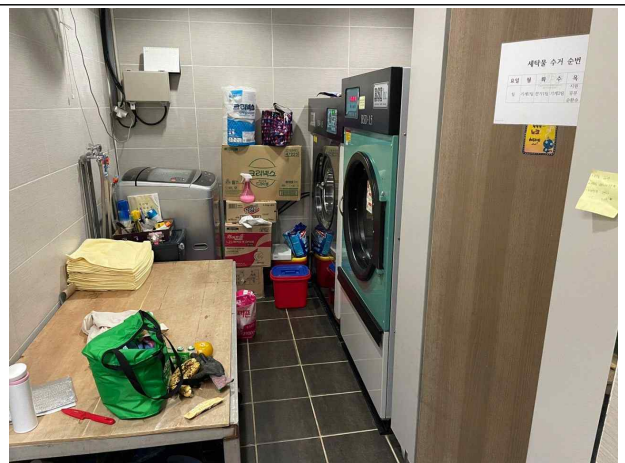
▲공사현장 컨테이너 휴게공간 식사시간. 냉난방 시설 없음



- 화장실, 세탁실 구분 없는 장소에서 음식물 보관까지 동시 사용



▲세탁기 옆 화장실칸



▲세탁실겸 화장실 탁자위에 음식물 보관

- 짐기류 제외한 공간이 협소해 활용이 어려움



▲탈의실 통로가 협소해 한명만 지나갈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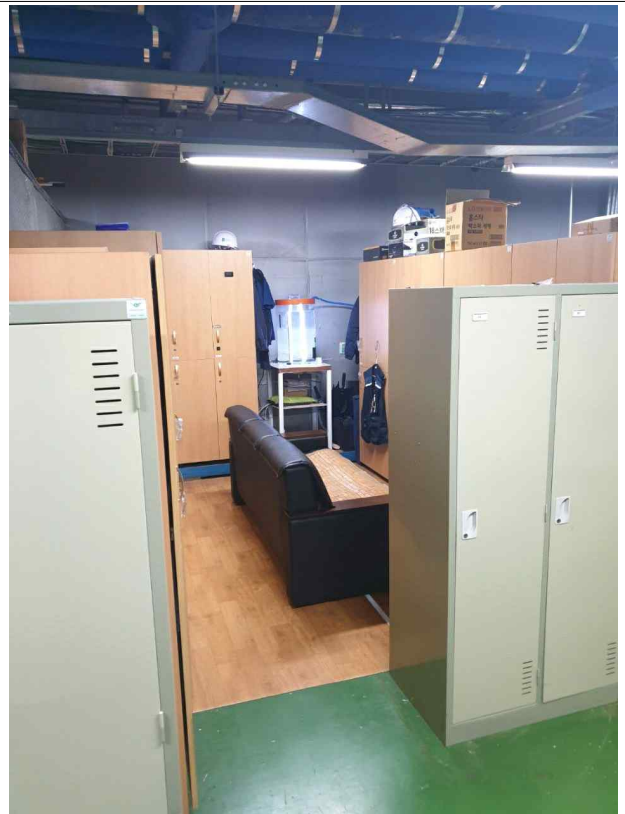
▲탈의실 사물함 간격이 좁아 동시에 환복이 어려움

## 2) 인천공항 비정규직

- 특경대 초소 내 휴게시설의 경우 상주직원 차량출입 소음으로 시끄러움(50dB 초과 여부 확인 필요)
- 특경대 초소 및 청사 내 휴게시설에 냉난방 설비 미흡(에어컨 없음)으로 적정온도 유지 안됨
- 탑승교 휴게실 내 짐기로 인해 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 못함. 남성휴게실의 경우 89.20㎡ 내 캐비닛 75개, 그리고 여성휴게실의 경우 71.10㎡ 내 캐비닛 33개가 있고, 추가로 각 휴게실 내 냉장고, 소파, TV 비치.
- 탑승동 전력팀, 기계팀, 소방팀, 건축팀 휴게시설이 각 사무실 내부에 있어 관리자에게 감시되는 느낌을 받음
- 남녀 휴게실 분리되어 있으나, 간이 칸막이로 구분되어 방음 안되는 구조)
- 휴게실 비품(냉장고, 전자레인지, 쇼파 등) 제공되지 않아 버리는 물건 주어서 사용



▲사무실 업무공간 내 회의실 옆 휴게시설



▲지하 기계공조실 내 휴게공간

### 3) 지역난방 자회사

- 사내 업무공간 기준에서 정원 24인 미만인 공간에 휴게시설 설치 제외하고 있음
- 실제 운영 현황에선 정원에 따르지 않고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하고 있음.
- ▷ 휴게시설 설치된 사업소 : 영남(대구)사업소(17명), 청주사업소(9명), 세종사업소(7명), 북부사업소고양지사(25명) 등
- ▷ 휴게시설 없는 사업소 : 분당사업소(25명), 중앙(상암)사업소(21명), 수원사업소(17명), 용인사업소(22명), 북부사업소파주지사(5명) 등

## Ⅰ 상세기준

가. **(적용기준)**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 및 시설기준표 준용(첨부)

- 현장 실정에 따라 세부기준 조정

나. 인원 산정 시 일반시기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 1) 사무공간 면적 기준표(1인당 면적기준)

(전용면적 기준)

직책별	일반사무실	단독사무실	비고
사장		50m <sup>2</sup> (약 15.2평)	집무실
팀장 및 사업소장		17m <sup>2</sup> (약 5.2평)	집무실
직원	7m <sup>2</sup> (약 2.1평)		집무실

(비고 1) 일반사무실의 경우 사무실 내 복도 공간 및 OA 기기 설치 공간 등을 포함

(비고 2) 사무실 전체 면적을 사용 인원 수로 나누었을 때 배정받는 면적임

### 2) 부속시설 면적 기준표(휴게실, 회의실 등)

(전용면적 기준)

시설명	기준	비고
회의실	25m <sup>2</sup> + 0.5m <sup>2</sup> (정원-20)	20인 이하 미설치
창고	순사무실 면적×5%	저장시설
문서고	순사무실 면적×5%	저장시설
휴게실	4.9m <sup>2</sup> + (정원-24) x 0.22m <sup>2</sup>	정원 24인 미만 제외

▲지역난방안전(주) 업무공간 기준

## 2. 개선안 제안

### 1) 위치

- 지하, 옥상, 계단참 등 환기가 안 되고 기온에 취약한 곳 불가
- 화장실과 세탁실은 용도에 맞게 분리 설치
- 감염병 예방 및 위생을 고려하여 식사공간 별도 마련 필요

### 2) 규모

- 최소면적 9m<sup>2</sup> (노동자 1인 이상), 동시에 쉬어야 하는 노동자 수 × 2m<sup>2</sup> 이상으로 설계. 감염병 예방 및 공간 활용도를 고려한 상향 조정 필요
- 캐비닛 등 공간활용 불가한 면적을 제외하고 순수 휴게공간을 확보하도록 개정

### 3) 사회적 요구가 높은 사업장

- 물류센터, 창고 등 중량물 취급 업무 추가

### 4) 모든 사업장 공지

- 사업장 공문 발송
- 법 시행 전 계도 및 관리 감독 강화

## 휴게공간 의무화 관련 서비스연맹 요구

의견 참조: 마트산업노조, 학비노조, 가전통신노조, 백화점면세점노조, 관광레저분과 등  
취합 정리: 서비스연맹 정책국장 정하나

### 1. 접근성 좋은 충분한 공간,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감염병 위기 상황 고려

- 백화점·마트·면세점 등 다층으로 이뤄진 대규모 유통점포는 수백명에서 수천명의 노동자가 일하는데 비해, 휴게실 등 노동자 전용 휴게공간은 턱없이 부족
- ‘국내 73개 백화점의 휴게실 수용가능 인원은 백화점 한곳당 21명. 중간규모 백화점에 대개 2000명 안팎의 판매직원이 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열악한 수준. 휴게실 수용가능 인원이 백화점 전체 직원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경우도 여럿’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 건강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 2016) → 인원대비 휴게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계단이나 복도, 매장 후방창고에서 쉬는 경우 많음
- 백화점/면세점 라커룸: 좁고 환기가 불가능한 지하층에 위치하는 경우 많음.
- 백화점/면세점 직원 전용 화장실: 인원대비 무척 좁음 (2칸뿐)
- 코로나 감염병 확산 시기 불충분한 직원 휴게공간으로 좁은 계단/복도/후방창고 등에 노동자가 밀집하는 풍선효과 발생한 사례 다수

(관련기사: [경향] 백화점 집단감염의 비밀, '후방'에 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7241125001>)

- 대규모 유통점포나 호텔/리조트의 경우, 접근성 고려하여 각 층별 휴게실 배치 반드시 필요함. 협력업체 노동자 수를 고려하여 휴게실/화장실/라커룸에 '충분히' 넓은 공간 확보해야 하는 것이 관건



실곳 없어 계단 복도에서 쉬는 백화점 노동자

## 2. 노동자 성별 고려, 분리된 휴게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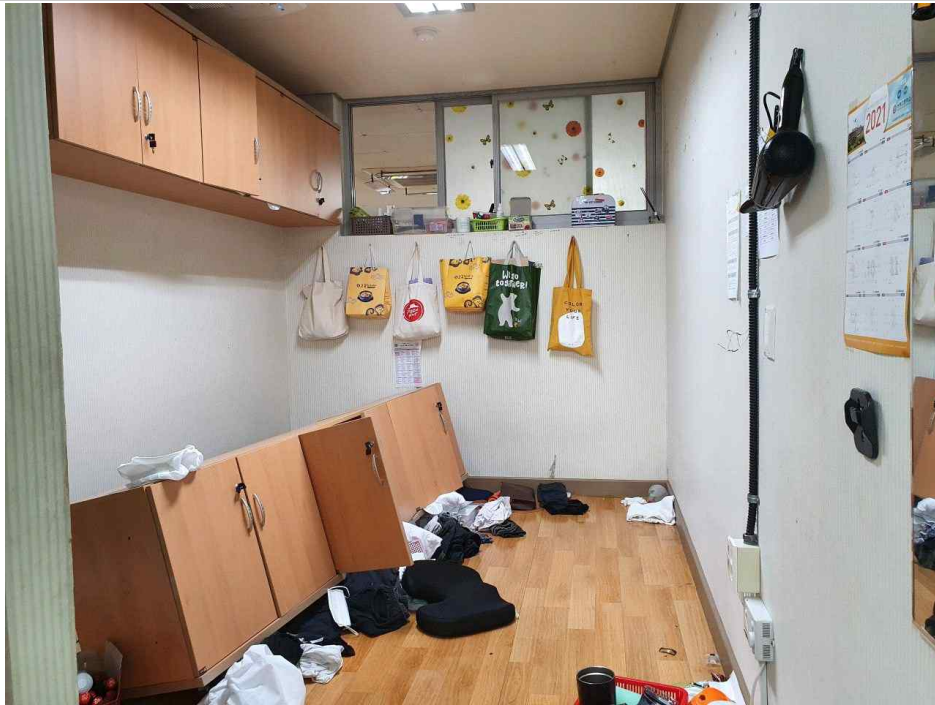
- 한쪽 성이 특별히 많이 일하는 사업장일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성별의 노동자를 위한 공간 부족.(예를 들어 백화점 마트의 경우 남성노동자 휴게실 부족, 제조업 남성중심 사업장 경우 여성 화장실 시설 노후 및 관리 미비)
- **화장실·휴게실과 같은 휴게공간은 기본권에 해당하는 공간이므로 각 성별의 노동자에 맞게 제대로 구비되고 관리되어야 함**

## 3. 다른 (편의)시설과 분리된 안전한 휴게공간

- 물품보관 창고, 보일러실 등과 혼재되어 사용하는 학교 청소노동자 휴게실 많음.
- 급식실 노동자 휴게공간도 매우 협소하여 다리를 접고 앉아야 겨우 들어가는 곳 다수.
- 경기도\*\*학교 사례: 휴게실 상부장이 떨어져 밑에 근무대기 중이던 조합원이 하반신이 마비가 되는 사건이 발생함. (아래 현황 참고)

### 학교 현황

- 1) 해당 학교의 급식실은 1명의 영양교사와 9명의 조리사·조리실무사가 근무하는 학교
- 2) 해당 학교의 휴게실은 협소하여 폭이 노동자들이 앉아서 서로 다리를 뺨으려면 교차해서 뺨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길이 역시 한 줄에 벽에 걸어놓은 장이 딱 찰 정도로 짧은 공간이었음
- 3) 좁은 휴게실로 2층에 휴게공간을 추가로 만들어 놓았지만 작업이 1층에서 이루어져 2층 휴게실은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움



### 당일상황

- 1) 사고 당시 조리업무 사전준비조 영양교사 및 급식노동자 5명이 조리실에 있었으며 4명은 휴게실에서 업무대기 중이었음
- 2) 휴게실 한쪽 병면 상부에 부착되어 있던 옷장이 조리실무사들의 머리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함(9시 15분)

### 문제점

- 1) 인권침해와 사고가 예견된 휴게실
  - ① 최소한의 휴게를 취하기에도 부족한 휴게실 면적
  - ② 업무에 필요한 물품본관 장소가 없어 휴게실 벽에 달아 놓은 장
  - ③ 수 차례 휴게공간 확보 요구에도 묵묵부답 교육청
- 2) 시공상의 문제
  - ① 상을 지탱한 유일한 부속 품 짧은 나사 못
  - ② ‘ㄱ’자 상받침 없이 시공
  - ③ 다른 학교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다른 편의시설과 분리된, 온전하고 넓은 공간으로 확보되어야 함
- 물품을 비치하는 공간은 분리되거나, 노동자의 휴식이 침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배치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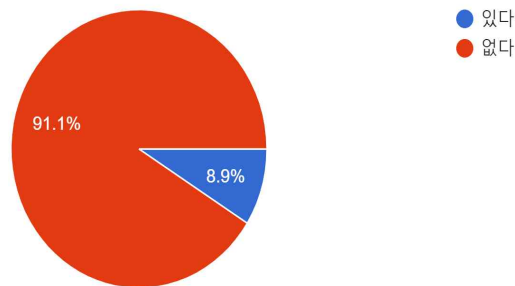
#### 4. 택배, 배달, 가전방문서비스 노동자 등 이동많은 노동자의 거점공간 휴게시설

- 사무실에 상주하지 않고 노동과정 중 이동이 많은 노동자의 경우도, 대리점/터미널/물품보관 창고 등 노동자가 업무중 반드시 들러야 하는 거점이 있을 수 있음.
- 거점공간에 휴게공간이 거의 전무하고 있어도 매우 열악한 수준임.  
(아래 실태조사 참고)
- 이동노동자 거점에 휴게공간 마련 시급: 물품 비치 공간과의 분리, 쾌적하게 관리된 성별분리된 화장실, 흡연공간과 분리, 냉난방 시설 구비, 음용시설 구비 등

※참고: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지부 창고시설 실태조사 중

1. 창고 내부에 별도의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나요?

응답 81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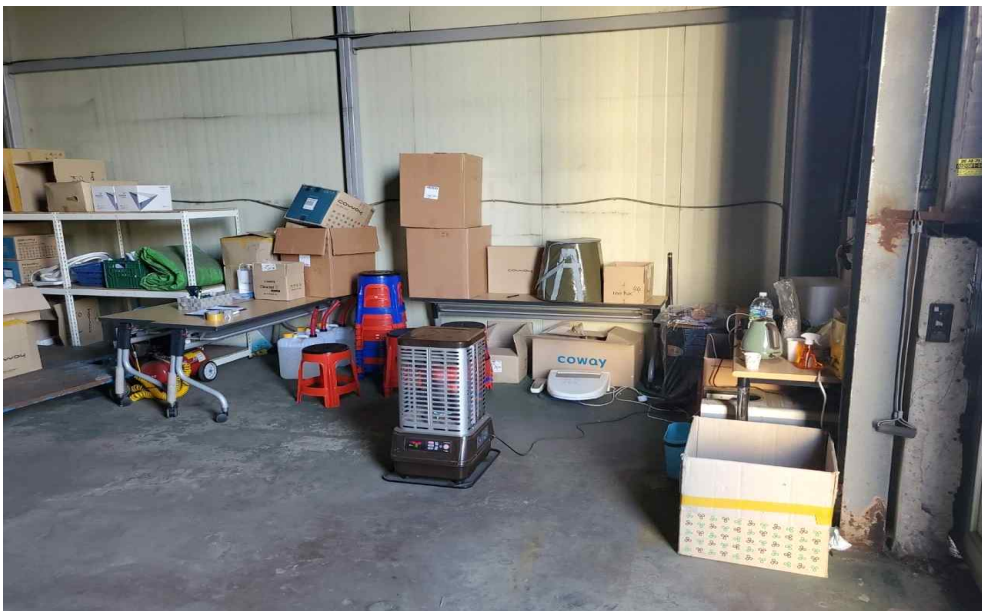


분석결과 90%이상의 창고에 서비스매니저의 휴식공간이 마련되어있지 않으며 그에 해당하는 서비스 매니저는 추운겨울 더운 여름 밖에서 지낼 수 밖에 없는 현실임 또한 휴게 공간이 있다고 응답한 지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간이의자, 플라스틱 테이블 바람막이 없는 공간을 서비스매니저가 직접 개조하여 간이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됨.

▼실제 사례 사진 : 휴식공간이 없어 창고 주변 바닥에 앉아 있음.



▼실제 사례 사진 : 창고 내 일부 공간을 서비스매니저가 직접 공사하여 사용중



▼창고 내 간이 물 마시는 공간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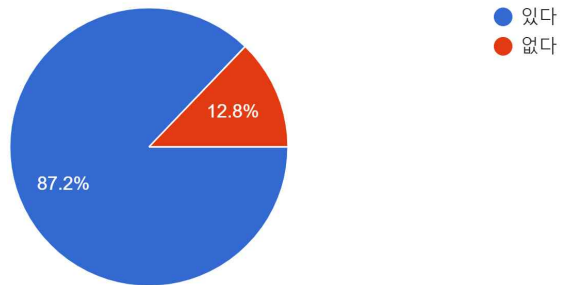


▼창고 내 휴게공간이 없어 쫓그려 앉아 휴식을 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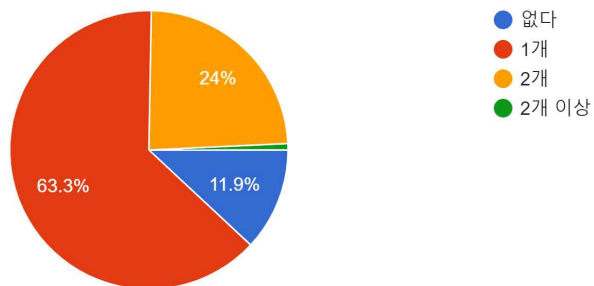
2. 창고에 화장실은 마련되어있나요?

응답 81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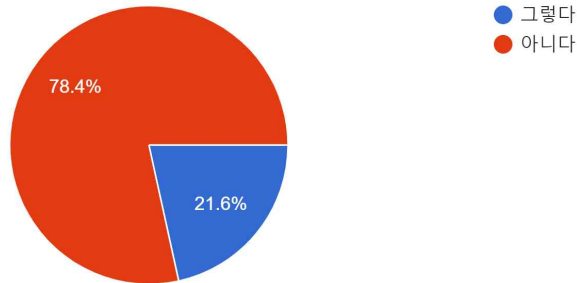
3. 창고에 화장실은 몇 개 인가요?

응답 82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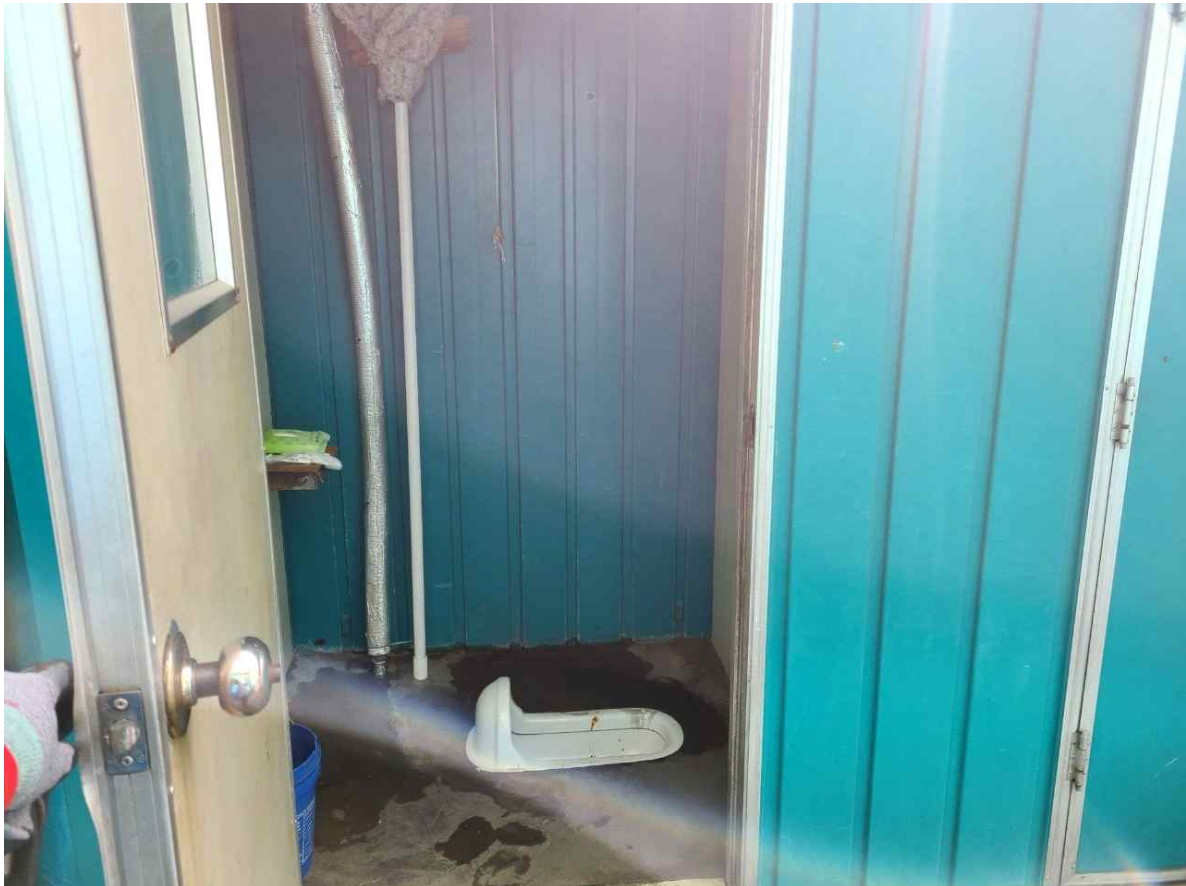
#### 4. 창고에 화장실은 남녀 별도로 마련된 화장실 인가요?

응답 798개



분석결과 87%정도 창고에 화장실이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한 지점의 인원이 많게는 37명으로 인원대비 마련된 화장실의 수가 1개로 턱없이 부족하며 심지어 화장실이 없는 비율이 12%에 달한다. 또한 추운 겨울철 창고 대부분의 수도시설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 동파 및 결빙으로 있는 화장실도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80%가량의 설문응답 결과가 남녀화장실의 구분이 없어 여성 서비스매니저가 함께 생활하는 창고는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실제 사례 사진 : 구식 화장실 및 수도 시설 없음



▼실제 사례 사진 : 겨울철 결빙 및 동파로 사용 불가, 고장 난 소변기 수리 안 됨



▼실제 사례 사진 : 남녀 구분 없는 화장실.



## 5. 이동노동자 쉼터

- 재가요양보호사, 가사노동자, 대리운전, 퀵서비스, 플랫폼배달노동자 등 전형적 이동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인데다가 거점이 없는 경우가 다수
- 지자체가 지하철 역사나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기존 공공시설과 연계하여 이동노동자 쉼터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 혹은 원청 기업(플랫폼 등)이 출자하여 각 지역 거점에 쉼터를 구성하게 하는 방안 적극 고려 필요.

